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0. 4. 29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 5. 6
   다. 상정일자 : 제9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시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시장의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는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별 정년에 준하도록 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중 시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